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제3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 정책방향 수립

제3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 목 적

- 20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산’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통해 새로운 행정체제로 전환해나가는 시점이므로,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 국가유산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탐색하고자 함

□ 개 요

- 주 제 :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 정책방향 수립
- 방 향 : 산업분야 발전가능성을 진단하고, 정책 및 제도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일 시 : 2023. 9. 14. (목), 15:00~17:40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105-106호
- 주 최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참 석 자 : 국가유산 산업분야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 세부일정

[사회] 채경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시 간	일 정	주요내용
15:00-15:05	5'	- 참석자(내빈) 소개
15:05-15:10	5'	개회사 이경훈(문화재청 차장)
15:10-15:15	5'	기념촬영 제3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개최 기념촬영
15:15-15:30	15'	주제발표① ○ 국가유산의 산업육성 의미와 방향 - 정상철(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15:30-15:45	15'	주제발표② ○ 국가유산 산업 통계개발 추진 현황 - 조일형(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팀장)
15:45-16:00	15'	휴식 휴식 및 장내 정리
16:00~17:20	80'	분야별 산업 발전방안 ○ 좌장: 이은하(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원장) ○ 토론 *가나다 순 - 김동현(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 김우용(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 원장) - 김재홍(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센터장) - 김주일(디자인주 대표) - 안형기(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겸임교수) - 이현민(덱스터스튜디오 실감콘텐츠본부 본부장) - 정상우(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17:20~17:40	20'	질의응답/건의 청중(업계 관계자) 대상 질의응답
17:40		폐회 폐회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 정책방향 수립

차례

“ 개 회 사 ”

이경훈 | 문화재청 차장 • 01

“ 주제발표 ① ”

국가유산의 산업육성 의미와 방향 • 03

정상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 주제발표 ② ”

국가유산 산업 통계개발 추진 현황 • 19

조일형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팀장

“ 토 론 문 ”

김동현 |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 35

김우웅 |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 원장 • 38

김재홍 |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센터장 • 41

김주일 | 디자인주 대표 • 54

안형기 |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겸임교수 • 55

정상우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58

“ 부 록 ”

국가유산기본법 • 63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 정책방향 수립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차장 이경훈입니다.

오늘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을 맞이하여, 산업계 관계자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문화·무형·자연 유산을 보존하고, 국민들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유산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조금씩 확장되어 오늘과 같이 '산업'을 주제로 박람회와 정책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계의 성장과, 신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관계자들께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각 분야의 산업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난 5월 16일 문화재청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국가유산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기본법에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 및 상품의 개발, 제작, 유통 등 산업의 장려와 취업·창업 촉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가유산 수리와 활용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포럼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산업분야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새로운 제도와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심도 깊은 토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육성에 대한 정책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 정책방향 수립

주제 발표
①

국가유산의 산업육성 의미와 방향

정 상 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국가유산의 산업육성 의미와 방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정상철

국가유산의 산업육성 의미와 방향

CONTENTS

- 01 유산산업 개념과 육성의 의미
- 02 유산산업 육성의 사례
- 03 유산산업 육성의 방향

01 유산산업 개념과 육성의 의미

01

산업과 유산산업의 개념



1. 산업

• 산업이란?

- 상품화
- 시장화
- 정보화
- 체험화(체험경제)
- 생산성,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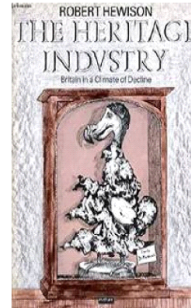
• 표준산업분류에서의 정의

-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
- ※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 정의
- 산업 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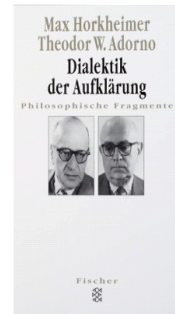


2. Heritage Industry

- **Collins Dictionary**
"an industry that **manages** the historical sites, buildings, and museums in a particular place, with the aim of encouraging tourism"
- **Robert Hewison(1987:9)**
"Instead of manufacturing goods, we are **manufacturing heritage**, a commodity which nobody seems able to define, but which everyone is eager to sell"



The Heritage Industry(1987)
by Robert Hewison



Dialectic of Enlightenment(1947)
by Max Horkheimer & Theodor W. Ador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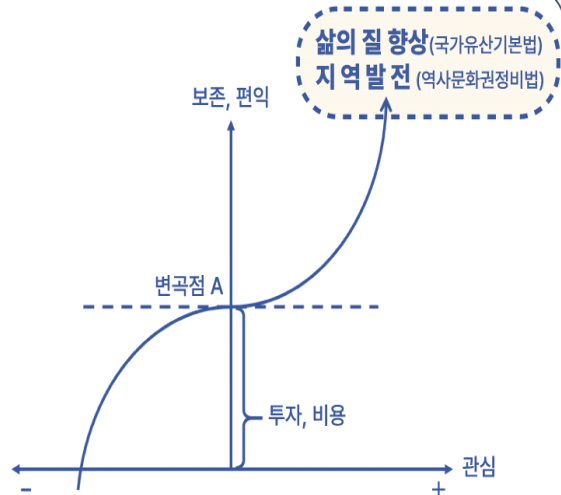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관리 : 폭탄 돌리기**





개념적 변화

문화재
Sovereignty
배타적, 의무

→

유산
Reformation
포용적, 책임

환경적 변화(제4차산업혁명기술)

- Heritage Asset
- Heritage Place
- Heritage Industry

- ✓ 자기주도형 산업
✓ 모세혈관 강화



가치(value)

Heritage

가격(price)



유산관광 : 적대관계 → 긴장관계 → 병행발전



연말뉴스

한국전통문화의전당 근무복 '왜색논란'에 "도입 재검토"

충고시선 | 2023-02-19 18:50

| "방위감정 일색은 선입견에 억울한 부분도 있어"

한국전통문화의전당 개량 한복 근무복
[한국전통문화의전당 제공/국민의힘 제공]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직원 근무복으로 도입 예정이던 개량 한복이 일본 전통 의상과 유사해 '왜색논란'이 일었던 한국전통문화의전당이 근무복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19일 입장을 밝혔다.

사회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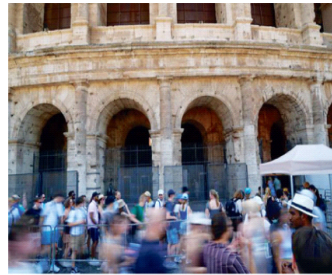
"너무 많이 온다" 관광객 막아선 유럽

2023-07-04 (수)

(사진)

▶ 하늘길 플라자 '오버 투어리즘' 프랑스 관광 명소 등 입장객 제한...이탈리아선 40만원 '셀카 벌금'도

▶ 멕시코도 내년부터 입장료 받기로 ...쓰레기주거난 등 주민 불안 폭증, "차라리 오지 말라" 관광 제한 대책



지난 여름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 앞에 몰려온 관광객. [로이터]

국가유산의 산업육성 의미와 방향

02 유산산업 육성의 사례



- 미국 역사보존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가 1977년부터 실시하는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지역의 촉진자(facilitators)로 임명되어 지역의 자산 소유자들과 상인 단체를 교육하여, 지역민이 스스로 '지역의 전통적인 자산'을 기반으로 주요 거리를 활성화 하도록 함
- 경제활력, 디자인 및 설계, 조직화, 홍보 분야의 4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업체 지원

4가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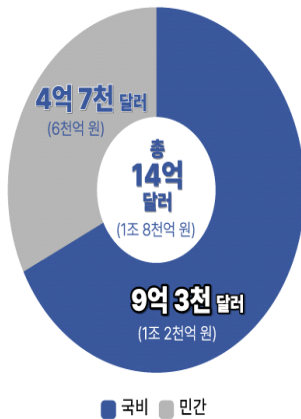


출처: Main Street America 홈페이지

<p>누적 재투자 금액(1980~)</p> <p>1,016억 달러 (약 133조 원)</p>	<p>2022년도 재투자 금액</p> <p>62억 달러 (약 8조 원)</p>
<p>누적 활성화 건물 수(1980~)</p> <p>325,119 건</p>	<p>2022년도 활성화 건물 수</p> <p>10,688 건</p>
<p>누적 일자리 순증가량(1980~)</p> <p>746,897 명</p>	<p>2022년도 일자리 순증가량</p> <p>7,657 명</p>
<p>누적 지원사업 순증가량(1980~)</p> <p>168,693 건</p>	<p>2022년도 지원사업 순증가량</p> <p>7,657 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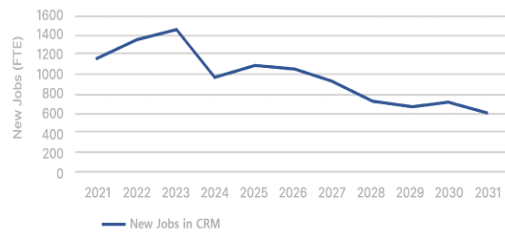


2020년도 CRM산업 지출 규모 추정치



출처: Forecast for the US CRM Industry and Job Market, 2022~2031 (Altschul and Klein,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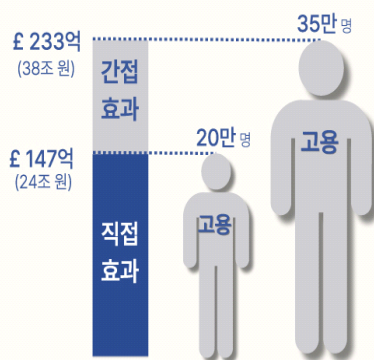
2021-2031 CRM산업 규모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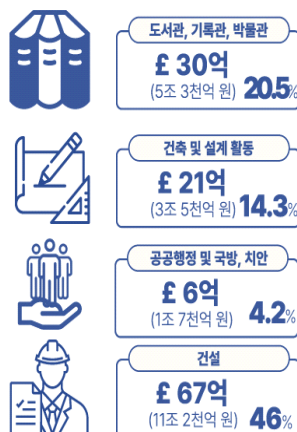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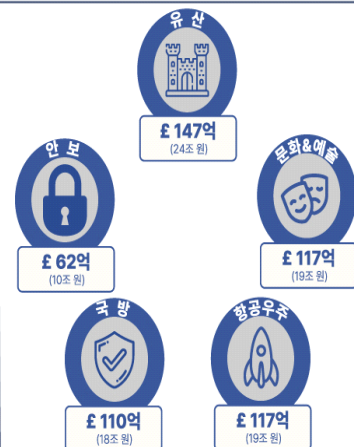
- 향후 CRM 산업 규모 예측(2020~2031년)
 - 매출 14억 달러(2020) → 18억 달러 (2031)
 - 신규고용 약 11,000여 명
- 기업 1,300여 개, 전문가 1만여 명

출처: Forecast for the US CRM Industry and Job Market, 2022~2031 (Altschul and Klein, 2022)

유산 분야 총부가가치(2019)



2019 주요 유산분야 총부가가치(직접)

유산 분야의 위상
- 2019 분야별 총부가가치 비교-



- 2017년부터 시작된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은 문화재보존, 문화재 안전·방재, 문화재 수리·복원, 매장문화재, 디지털 헤리티지, 박물관, 문화재 활용과 관련된 업체에서 개발한 상품이 전시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됨
- 국제문화재산업전은 대한민국 유일의 문화재, 박물관 전문 전시회로서 문화재 각 분야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한 곳에서 교류하는 행사임
-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업체 및 부스, 방문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화재 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해외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재 분야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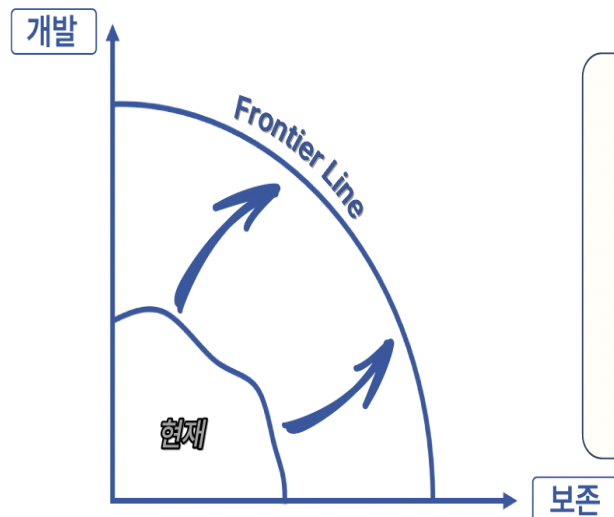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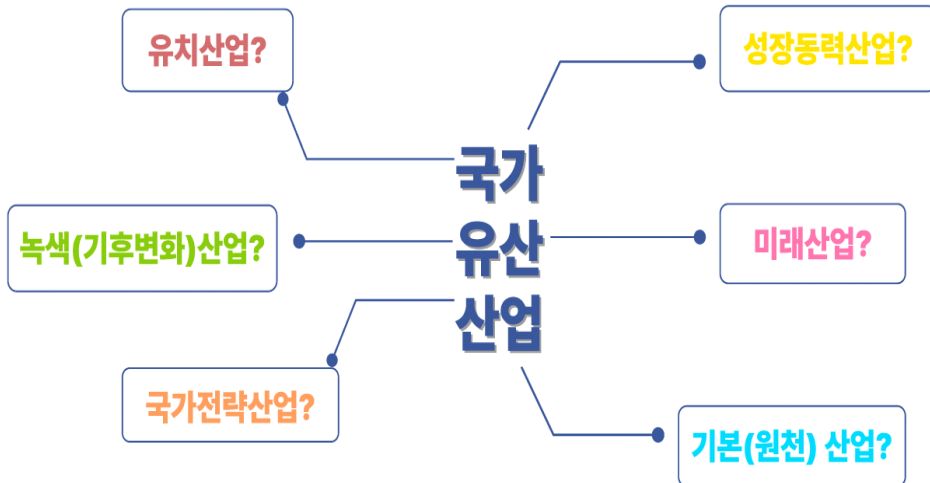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참가업체 수	36개	65개	84개	70개	71개	93개
개설부스 수	54개	132개	235개	270개	285개	298개
방문자 수	1,206명	2,672명	3,732명	2,584명	3,512명	4,654명



출처: 2022 국제문화재산업전 결과보고서(2023)

국가유산의 산업육성 의미와 방향

03 유산산업 육성의 방향



• PIE 키우기

- ✓ 유산의 친구만들기
- ✓ 유산의 보완재 만들기
- ✓ 유산과 관련된 모세혈관을 확대하고 심화
- ✓ 유산의 시장 만들기
- ✓ 유산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높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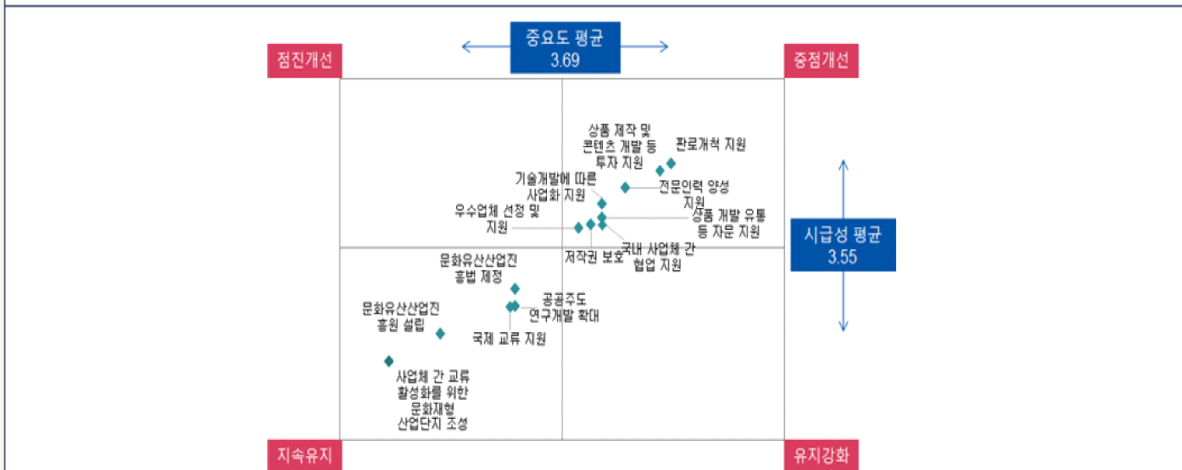


구성	내용	예
주체부문	유산의 소유자와 관리자와 관련된 부문, 유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혁신능력)을 담지	주체의 역량 구축, 인력양성, 창업 등
연계부문	주체간의 상호작용 및 시스템 산물의 확산과 활용을 강화.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문화재단, 지원기관 등
제도부문	유산 보호, 관리 활용 등의 룰과 관련 되는 부문	법률, 규정
기술부문	보존처리기술 및 활용기술(VR 등)	R&D, 문화재단연구원, 기업 등
수요부문	유산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needs)와 욕구(wants), 선호(preference)의 크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willingness to pay)



유산분야 산업 진흥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n=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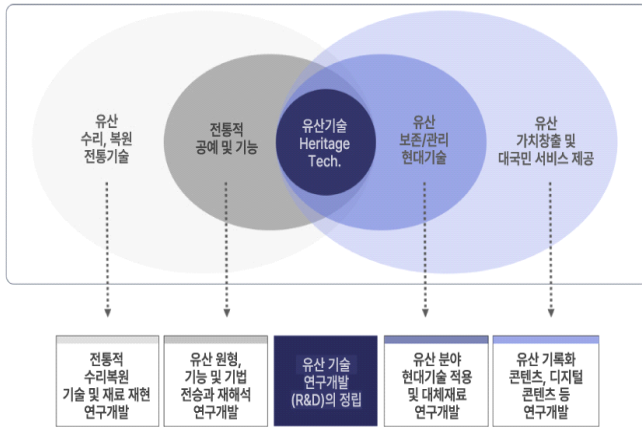
출처: 문화재 산업 진흥 중장기 방안 마련 및 법률 제정 연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22: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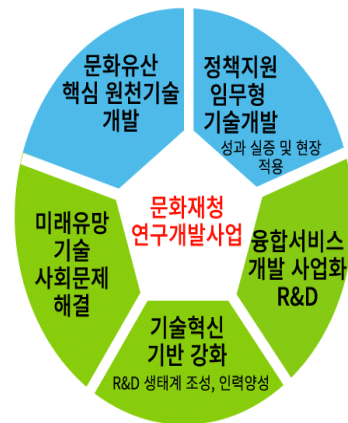
문화유산 R&D 기반 조성

출처: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문화재청, 2020)



문화유산 R&D 추진 개념도

출처: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문화재청, 2020)



중앙부처 전통문화산업 추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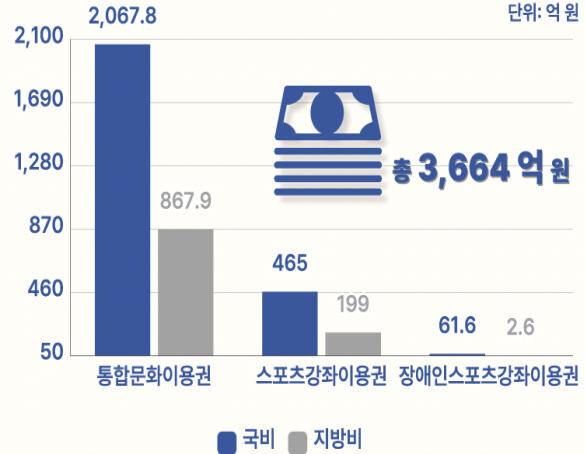
소비자 육성



박제가의 '우물론'

"비단을 입지 않으니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고, 그릇이 비둘 어지든 어쩡든 간에 개의치 않으므로 예술의 교묘함을 알지 못하니, 나라에 공장(陶冶)가 없어지고, 기예도 없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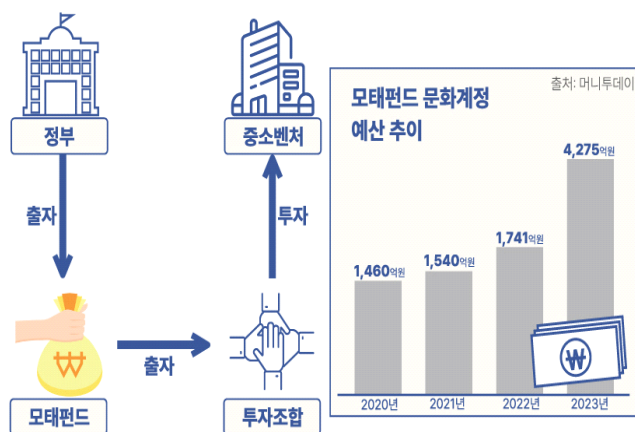
문화·체육 바꾸처 2022년 예산집행 실적



출처: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보고서(2023)



모태펀드



● 도시 개선 및 복원 대출 프로그램

City Improvement and Restoration Program

-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 개선 및 복원 프로그램
- 고위험의 오래된 주택 소유자들에게 시장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
- 대출은 연방사회개발지구보증금(Federal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무이자에 금계정을 담보로 이루어짐

● 회전기금 Revolving Fund

-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사버나역사재단(Historic Savannah Foundation)은 회전기금을 활용하여 역사적 건물을 보호하고 보존함
- 기부, 구매, 또는 매매 옵션을 통해 유산적 중요성과 시장성이 있는 위험에 처한 건축물 매입하고 수리하여 판매 또는 임대

●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 정책방향 수립

주제 발표
②

국가유산 산업 통계개발 추진 현황

조 일 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팀장





국가유산 산업 통계개발 추진 현황

2023.09.14.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조일형

목 차

- 1 국가유산 산업 통계의 필요성
- 2 국가유산 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 3 국가유산 산업의 조사 모집단
- 4 국가유산 산업 조사 방법 및 내용
-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Part 1, 국가유산 산업 통계의 필요성

국가유산 정책 동향

국가유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우리나라 국가유산 정책은 **보존 및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보존과 활용이 병행됨**에 따라 국가유산 분야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이와 관련한 공급과 수요가 활발해짐
- 공급과 수요의 활성화는 국가유산을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연계, 최근에는 점차 확대되어 **산업적 규모**를 갖게 됨
- 즉 기존에는 국가유산 산업이 수리, 발굴, 무형 등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국가유산 활용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향유 및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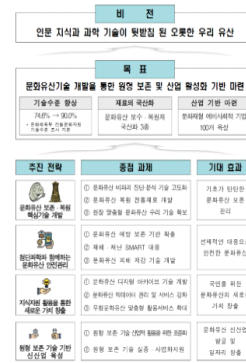
신기술 개발과 첨단과학을 적용한 국가유산 산업

- 최근에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대전환과 함께 전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지속적인 보존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예방 · 방재, 수리 · 복원, 관리, 공연 · 전시, 정보 · 콘텐츠 분야 등에 **신기술 개발과 첨단과학을 적용한 국가유산 산업**이 주목받고 있음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계획 수립〉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3

Part 1, 국가유산 산업 통계의 필요성

국가유산 정책 동향

국가유산을 자원으로 한 산업의 중요성

- 국가유산을 자원으로 한 국가유산 산업은 현재 문화재청의 정책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 및 진흥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유산 산업은 문화재의 지속적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이러한 산업의 발전 및 진흥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축할 경우 우리 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유산 산업 외에 **국내 타 산업과의 연계**로 파생적인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직접 연계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임

국내 국가유산 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분야 정책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조사 필요

4

Part 1, 국가유산 산업 통계의 필요성

국가유산 산업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현황

- 국가유산 산업 관련 통계는 문화재청 각 실무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작성하여 내부 자료로만 활용

법률	통계	국가유산 산업 관련 내용	작성 부서
문화재보호법	문화재교육실태조사	문화재교육기관 현황	문화유산협력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방재정보현황 통계	문화재 방재 관련 사업자의 현황	안전기준과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돌봄사업 실태조사	문화재돌봄 사업자의 현황	보존정책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실태조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전승 활동 기관의 현황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업자 현황 통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인 현황	문화재수리업자의 현황 및 기술인력 실태 파악	수리기술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기관의 현황	보존정책과

*현행 법률 명칭 사용

- 여러 정책 실무 부서에서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통계 활용성과 관리의 한계점 발생
 - 통계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세를 확인하는데 한계 발생,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다 보니 관련 타 부서 또는 외부 이용자들의 활용이 거의 불가능
 - 조사통계의 경우 작성 및 관리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역업체의 변경에 의해 일관성 있는 통계 확보 어려움
- 국가유산 산업의 발전 및 진흥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통합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기 위해 '국가유산 산업 통계' 개발 필요

5

Part 1, 국가유산 산업 통계의 필요성

통계작성 필요성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의 부재

- 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산 산업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신규통계의
필요성

- 문화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산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산업통계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유산 산업 통계조사'라는 신규통계가 필요함

신뢰할 수 있는
통계 기반 마련

- 국가유산 산업 조사를 국가통계로 개발 및 승인 받아 공표함으로써 문화재와 관련된 정책 수립 주체인 중앙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효과 창출

6

Part 2, 국가유산 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국가유산* 산업의 정의와 범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서는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문화재라는 용어 사용, Part2~4에서는 문화재로 통일하여 사용)

문화재(국가유산) 산업의 정의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기획, 제작, 관리, 유통, 연구,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산업

문화재(국가유산) 산업의 범위

문화재 산업의 범위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후방산업(발굴, 조사, 복원, 수리, 보존 등), 전방산업(관광, 문화, 콘텐츠 등), 지원산업(교육, 연구개발, 행정, 정보화 등)을 모두 포함

- (후방산업) 문화재의 본연의 가치를 발굴, 보존하는 활동이 중심인 산업
- (전방산업) 문화재의 가치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중심인 산업
- (지원산업) 전·후방산업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영향력을 지닌 활동이 중심인 산업



7

Part 2, 국가유산 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문화재 산업의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문화재 관련 제품 제조업	11. 문화재 보존·관리 재료 및 장비 제조업	111. 문화재 수리용 재료 제조업 112. 문화재 보존·장비 제조업
	12. 문화재 공예품 및 식품 제조업	121. 문화재 공예품 제조업 122. 문화재 식품 제조업
	13. 문화재 관련 기념품 제조업	130. 문화재 관련 기념품 제조업
2. 문화재 보존·관리업	21. 문화재 발굴업	210. 문화재 발굴업
	22. 문화재 보수정비업	221. 문화재 수리업 222. 문화재 실측설계업 223. 문화재 감리업 229.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업
	23. 문화재 안전관리 및 기록물 제작업	231. 문화재 안전관리업 232. 문화재 기록물 제작업
3. 문화재 관련 서비스업	31. 문화재 여가 서비스업	311. 문화재 공연예술업 312. 문화재 전시관람업 313. 문화재 숙박체험업 314. 문화재 콘텐츠 제작 서비스업
	32. 문화재 매매업	320. 문화재 매매업
	33. 문화재 관련 지원 서비스업	331. 문화재 연구개발업 332. 문화재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4. 문화재 교육업	41. 문화재 전수업	410. 문화재 전수업
	42.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업	420.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업

8

Part 2, 국가유산 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문화재 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업종 정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종 정의
1. 문화재 관련 제품 제조업	11. 문화재 보존·관리 재료 및 장비 제조업	111. 문화재 수리용 재료 제조업	유형문화재(건조물, 동산 등) 복원 및 수리 등에 활용되는 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체 <예시> 기와, 한지, 석재, 목재 등
		112. 문화재 보존·장비 제조업	유형문화재(건조물, 동산 등) 보존 및 복원, 수리 등에 활용되는 보존약품 및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체 <예시> 보존처리약품, 스킨너 등
	12. 문화재 공예품 및 식품 제조업	121. 문화재 공예품 제조업	국가 및 시도로 지정된 보유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공방 등을 운영하면서 전승자들이 전통기법 혹은 재료를 활용하여 공예품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체 <예시> 공예품, 미술품, 의복 등 <제외> 대량으로 공예품을 제작 또는 생산하는 사업체는 제외
122. 문화재 식품 제조업		국가 및 시도로 지정된 보유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사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전승자들이 전통기법 혹은 재료를 활용하여 식료품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체 <예시> 전통주 제조 관련 보유자가 전통주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전승자들과 양조장을 운영	
2. 문화재 보존·관리업	21. 문화재 발굴업	130. 문화재 관련 기념품 제조업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대중들에게 문화재를 소재로 한 캐리커, 모형 등의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 <예시> 경복궁 모형 제작·판매 등 <제외>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이수자 등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제외
		210. 문화재 발굴업	육상, 수중 등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을 위한 조사·측정, 기획 등의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등) 및 시설을 갖추고 문화재청에 허가(등록)를 받은 사업체
	22. 문화재 보수정비업	221. 문화재 수리업	문화재수리를 위한 보수단청, 단청공사, 목공사, 석공사, 번외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 인력 등을 갖춘 사업체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등) 및 시설을 갖추고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222. 문화재 실측설계업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위해 해답 기술 및 장비, 인력 등을 갖춘 사업체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등) 및 시설을 갖추고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223. 문화재 감리업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 인력 등을 갖춘 사업체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등) 및 시설을 갖추고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229.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업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치료 혹은 자연문화재로 지정된 수림지,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천연공원, 동물 등의 보존·관리 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예시> 동물치료소, 오수 및 하수처리 사업체 등	
23. 문화재 안전관리 및 기록물 제작업	231. 문화재 안전관리업	231. 문화재 안전관리업	문화재의 도난, 훼손 방지, 시설 유지 및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보안시스템 및 경비 인력 배치, 소방시설,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 보관, 단순 보수(補修) 등의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예시> 경비, 순찰, 보안, 소방, 전기, 통신 등 설치 및 관리
		232. 문화재 기록물 제작업	문화재의 원형을 기록·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동일한 재료와 제작 방식, 기법, 설계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활동과 문화재 관련 조사, 발굴, 전수, 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들을 디지털 방식의 스캔, 녹음, 촬영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기록물 형태로 제작하는 사업체 <예시> 원형기록화, 문화재 3D 스캔, 가상·증강 현실 이미지 등

9

Part 2, 국가유산 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문화재 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업종 정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종 정의
3. 문화재 관련 서비스업	31. 문화재 여가 서비스업	311. 문화재 공연예술업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중 '예능' 분야의 보유자가 보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춤과 악기, 노래 등의 공연 활동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체.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제외한 일반 공연단체에서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공연하는 활동도 포함 <예시> 판소리, 태평무 공연 등
		312. 문화재 전시관람업	유형문화재(건조물, 동산 등)와 자연문화재(폭포 등 자연경관, 동물, 식물 등)를 일반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유형문화재 예시> 역사박물관, 고궁박물관 등 <자연문화재 예시> 자연공원, 자연보존원, 민장굴 등
		313. 문화재 숙박체험업	유형문화재(건조물, 동산 등)와 자연문화재(폭포 등 자연경관, 동물, 식물 등)를 활용하여 일반국민이 체험 활동 등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체 <유형문화재 예시> 한옥스테이, 백제한성 역사체험 등 <자연문화재 예시> 천연기념물 먹이주기 등
		314. 문화재 콘텐츠 제작 서비스업	문화재 콘텐츠를 일반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문화재 콘텐츠를 토대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급, 유통하는 사업체. 즉, 일반 서적, 공연물 등 뿐만 아니라 공연 활동을 촬영 및 녹화하여 TV 혹은 DVD, OTT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체를 포함. <예시> 문화유산 채널, 유튜브, 미디어파사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32. 문화재 매매업	320. 문화재 매매업	문화재보호법(제75조)에 의해 문화재청에 문화재매매업자로 허가를 받아 문화재의 구매, 판매, 중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체 <예시> 화랑, 갤러리, 옥션 등
331. 문화재 연구개발업		문화재 발굴, 보존, 관리 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측정 및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 등을 수행하는 사업체 <예시> 문화유산 R&D 참여업체, 문화재 정책, 조사 등 연구 수행업체	
33. 문화재 관련 지원 서비스업	332. 문화재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332. 문화재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 등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기초단체 산하의 독립적인 사업자등록(법인등록)을 한 소속기관 등 포함 <예시>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 지자체 문화원 등 <제외> 국가기관(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재 관련 분야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상호간의 이익 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와 문화재 관련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일반 또는 특정 시민으로 구성된 NGO 활동 위주의 활동을 하는 단체를 포함. 문화재 관련 법령에 의해 문화재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문화재 보존(보호)을 위해 옹호 및 홍보하는 단체를 포함 <예시> 문화재 수리협회, 한국문화유산협회, 문화재지킴이, 미래유산시민연대 등
		41. 문화재 전수업	410. 문화재 전수업
4. 문화재 교육업	42.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업	420.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업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교육기관. 즉, 고등학교, 문화인류학과 등 문화재 발굴, 보존, 관리, 수리 등과 연관되어 있는 정규교육과정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문화재 보존, 수리 등 전문 기술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 국·공립, 전통무용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 <예시> 국립국악고등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건축학교, 문화재수리 자격증 학원 등 <제외> 무형문화재 전수목적 교육기관은 무형문화재 전수업에 포함

Part 3, 국가유산 산업의 조사 모집단

모집단 구축 절차



11

Part 3, 국가유산 산업의 조사 모집단

모집단 구축 현황(1)

※ 현재 통계청과 분류체계를 협의 중에 있어서 예비모집단 수와 최종 조사모집단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대분류	중분류	(1) 예비 모집단 수	(2) 1차 정비 결과			(3) 2차 정비 결과		
			① 2022년 시험조사	② 문화재청 명부	③ 합계 = ① + ②	④ 판별·정비 대상 = (1) - ③	⑤ 키워드 판별 제외	⑥ 정비 조사 대상 = ④ - ⑤
1. 문화재 관련 제품 제조업	11. 문화재 보존·관리 재료 및 장비 제조업	25,966	60	185	245	25,721	25,116	605
	12. 문화재 공예품 및 식품 제조업	363,354	740	0	740	362,614	361,207	1,407
	13. 문화재 관련 기념품 제조업	4,948	20	0	20	4,928	4,742	186
2. 문화재 보존·관리업	21. 문화재 발굴업	17,668	0	167	167	0	0	0
	22. 문화재 보수·정비업	121,472	0	788	788	0	0	0
	23. 문화재 안전관리 및 기록물 제작업	36,020	106	41	147	35,873	33,892	1,981
3. 문화재 관련 서비스업	31. 문화재 여가 서비스업	114,741	976	134	1,110	113,631	110,823	2,808
	32. 문화재 매매업	14,243	0	831	831	0	0	0
	33. 문화재 관련 지원 서비스업	20,944	0	255	255	20,689	20,673	16
4. 문화재 관련 교육업	41. 문화재 전수업	21,503	0	165	165	0	0	0
	42.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업	68,288	466	48	514	67,774	66,888	886
합계		809,147	2,368	2,614	4,982	631,230	623,341	7,889

주. (1) 예비모집단수는 문화재 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로 파악된 수

① 2022년 시험조사는 연구원에서 작년에 수행했던 시험조사에서 판별된 문화재 산업 사업체 수

② 문화재청 명부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 되어 있는 사업체 수입

③ 키워드 판별은 문화재와 관련된 키워드(예: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종목)로 검색하여 문화재 산업 영위 사업체인지 판별함

12

Part 3, 국가유산 산업의 조사 모집단

모집단 구축 현황(2)

※ 현재 통계청과 분류체계를 협의 중에 있어서 예비모집단 수와 최종 조사모집단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대분류	중분류	① 1차 정비 결과	② 2차 정비 결과	③ 합계	3차 정비결과	
					④ 전화 조사 및 중복 업체 제외	⑤ 조사 모집단 = ③ - ④
1. 문화재 관련 제품 제조업	11. 문화재 보존·관리 재료 및 장비 제조업	245	605	850	404	446
	12. 문화재 공예품 및 식품 제조업	740	1,407	2,147	651	1,496
	13. 문화재 관련 기념품 제조업	20	186	206	109	97
2. 문화재 보존· 관리업	21. 문화재 발굴업	167	0	167	0	167
	22. 문화재 보수정비업	788	0	788	0	788
	23. 문화재 안전관리 및 기록물 제작업	147	1,981	2,128	1,365	763
3. 문화재 관련 서비스업	31. 문화재 여가 서비스업	1,110	2,808	3,918	1,255	2,663
	32. 문화재 매매업	831	0	831	0	831
	33. 문화재 관련 지원 서비스업	255	16	271	34	237
4. 문화재 관련 교육업	41. 문화재 견수업	165	0	165	0	165
	42.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업	514	886	1,400	453	947
합계		4,982	7,889	12,871	4,271	8,600

주. ① 1차 정비 결과는 대부분 문화재 산업 사업체로 볼 수 있으나, 정부기관 삭제, 중복 업체 제외(예: 문화재 발굴업의 경우 문화재 관련 지원 서비스업에도 포함) 등 재정비 작업을 거침
④ 전화 조사는 사업체에 직접 전화를 하여 문화재 관련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판별함

13

Part 4, 국가유산 산업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 및 대상

자료 수집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전문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
범위(모집단)	조사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문화재산업 분류체계 업종에 속해 있는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
대상 선정	표본 조사(모집단 업종별 종사자 수 또는 매출액 분포를 검토하여 전수총과 표본총으로 구성)
대상 규모	약 1,500여개 사업체
대상 지역	전국 17개 시·도

조사시점 및 기간, 공표 등

조사주기	1년
대상기간	조사 직전년도 1월 1일~ 12월 31일
조사기간	8월 ~ 11월
공표시기	조사기준시점 익년도 2월
공표방법	인터넷, 간행물, 보도자료 등
공표범위 및 내용	공표범위: 문화재산업의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현황 공표내용: 기초 현황, 종사자 수 현황, 재무현황, 애로사항 등

14

Part 4, 국가유산 산업 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표 개발

설문 설계 절차



설문 설계 시 고려사항

01 산업 현황 파악 및 시계열 분석을 위한 항목 개발

- ✓ 문화재산업 특성을 고려한 항목 개발을 통해 산업 현황 파악이 필요함
- ✓ 또한, 시계열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문화재산업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산업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 개발이 필요함

02 조사 대상자 응답 편의성 제고 및 응답 오류 방지

- ✓ 조사대상자의 무응답 방지 및 신뢰성 있는 응답을 위해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은 응답 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제시함
- ✓ 응답 오류 방지를 위해 설명문 제시 및 로직 구성 등 실시

03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한 문항 개발

- ✓ 문화재산업 혹은 세부 업종별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필요한 문항을 개발함

과학적·체계적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재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Part 4, 국가유산 산업 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표 유형

무형문화재(무형유산) 설문지

보존관리사업체 설문지

교육기관 설문지

Part 4, 국가유산 산업 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 항목

구분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일반사업체	교육기관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 · 대표자명 · 대표자 성별 · 설립연월 · 대표자 유형 · 소재지 · 조직형태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활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관련 사업 활동 여부 · 사업체(단체)명 · 대표자명 · 대표자 성별 · 설립연월 · 소재지 · 보유 면허(자격) · 조직형태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체 구분 · 활동 분야 · 주/부 사업 총 매출액 비중 · 주/부 생산 또는 판매 제품/서비스명 · 주/부 사업 업종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대표자명 · 대표자 성별 · 설립연월 · 소재지 · 조직형태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기관 유형
종사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상 지위별 전체 종사자 수 · 종사상 지위별 무형문화재 관련 종사자 수 · 연령별 무형문화재 관련 종사자 수 · 종사자 유형별 무형문화재 관련 종사자 수 · 무형문화재 관련 종사자 유형별 월평균인건비 · 무형문화재 관련 종사자 수급 상황 · 무형문화재 관련 인력확보가 어려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상 지위별 전체 종사자 수 · 종사상 지위별 문화재 관련 종사자 수 · 연령별 문화재 관련 종사자 수 · 종사자 유형별 문화재 관련 종사자 수 · 근로형태별 문화재 관련 종사자 수 · 문화재 관련 종사자 유형별 월평균인건비 · 2022년 신규인력 채용 여부 · 2022년 신규인력 채용 규모 · 2022년 신규인력 채용 이유 · 문화재 관련 인력수급 상황 · 문화재 관련 인력확보가 어려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상 지위별 전체 종사자 수 · 종사상 지위별 문화재 관련 종사자 수 · 연령별 문화재 관련 종사자 수 · 종사자 유형별 문화재 관련 종사자 수 · 문화재 관련 교사(강사 포함) 현황

Part 4, 국가유산 산업 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 항목

구분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일반사업체	교육기관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결산 기준 총 매출액(수입액) · 총 매출액 중 무형문화재 관련 매출액 · 무형문화재 관련 매출액의 유형별 금액 · 무형문화재 관련 공연 활동 건수 · 무형문화재 관련 유형별 활동 건수(제조/판매) · 시설 보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결산 기준 총 매출액(수입액) · 문화재 관련 매출액(수입액) · 문화재 관련 매출액의 유형별 금액 · 문화재 관련 사업 활동 시 외주 경험 · 2022년 결산 기준 외주 비용 · 외부위탁 또는 외주 업체 선정 기준 · 문화재 관련 사업 활동 유형별 건수 · 시설·장비 보유 현황 · 문화재 관련 기술개발 활동 경험 · 문화재 관련 기술개발 활동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결산 기준 총 매출액(수입액) · 문화재 관련 매출액(수입액) · 문화재 관련 매출액의 유형별 금액
지원사업 참여 현황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 형태 · 참여 지원 사업 주관 기관 · 문화재청 지원 사업 참여 만족도 · 문화재청 지원 사업에 불만족한 이유 · 무형유산 관련 사업 활동 시 애로사항 · 문화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 문화재산업 활동 개선 희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 형태 · 참여 지원 사업 주관 기관 · 문화재청 지원 사업 참여 만족도 · 문화재청 지원 사업에 불만족한 이유 · 사업 활동 분야 근로 환경이 나쁜 이유 · 사업 활동 분야의 근로 환경이 나쁜 이유 · 문화재 관련 사업 활동 시 애로사항 · 문화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 문화재 관련 사업 시 개선 희망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 형태 · 참여 지원 사업 주관 기관 · 문화재청 지원 사업 참여 만족도 · 문화재청 지원 사업에 불만족한 이유 · 문화재 관련 사업 활동 시 애로사항 · 문화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 문화재산업 활동 시 개선 희망 사항

Part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정책수립에 신뢰성 있는 기반자료로 활용

신뢰성 있는 국가유산 산업 통계 자료를 생산하여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정책수립 계획의 기반자료로 활용

국가유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

국가유산 산업 활성화 정책집행에 따른 사업체 매출기여도 평가 및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

국가유산 산업 현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가능

통계자료를 통해 업계에 대한 가장 근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정보 습득에서 오는 오류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는 업계 분석 자료로 활용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연구자료로 활용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국가유산 분야가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료로 활용

19

Part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활용방안

기술적 측면

- 국가유산 산업 현황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즉, 국가유산 산업 정보 통합관리로 업종별 산업규모, 일자리 현황 등의 추세 파악 및 시계열 예측을 통한 정책지원 사업 계획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경제산업적 측면

- 국가유산 산업의 분야별 발전 및 진흥 현황에 대한 정보로 활용
- 국가유산 산업 분야 신규 유입자의 창업 관련 정보로 활용

정책 개발적 측면

- 국가유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국가유산 관련 기술 개발(R&D)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20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 정책방향 수립

특
보
문
단

김동현 |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김우웅 |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 원장

김재홍 |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센터장

김주일 | 디자인주 대표

안형기 |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겸임교수

정상우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 정책방향 수립

- 안전·방재분야 제언 -

김 동 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문화재방재연구소 소장

국가유산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방재에서의 산업분야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드리기 앞서 국가유산기본법 목적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안전·방재 산업분야 관점에서 보는 정책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에서 제2장 국가유산보호기반조성 제7조(국가유산보호정책의기본원칙), 제8조(기본계획의수립)에서 먼저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안전·방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의 내용들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새로운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다시 열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재청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정책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 새로운 국가유산기본법 제3장 국가유산 보존·관리 제21조(재난예방및대응)와 제22조(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활동들을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보통은 기존의 하고 있는 일인데 새삼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기존 하던 업무를 하면 되지 굳이 다시? 이러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늘 하고 있는 업무이기에 당연히 정책이나 법이 바뀌거나 새로운 법이 제정되더라도 바쁜 행정업무의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치부하기가 쉽기 마련이다. 재난과 재해는 늘상 이러한 틈을 파고들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들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안전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업무에 대해 변화 없는 지속성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들로 인해 반복되는 재난을 야기하게 되고 언론에서는 이를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 뼈를 때린다. 이러한 감각이 둔해진 일상적인 안전정책 활동들은 무서운 재앙을 낳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토론자인 나는 “창의적 지속성과 회복력 있는 정책 활동이 없다.”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행정업무는 결국 경험하지 못한 재난, 재해들을 방지하지 못하게 되고 겪은 재난·재해들에 대한 새로운 대책들은 사후약방문이 되어 예방이 아닌 응급처치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새로운 재난이나 유사한 재난들을 겪게 되는 악순환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좋지 않은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토론자인 나는 다음 셋째에서 기술하는 새로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방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재난·재해들과 경험한 재난·재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활성화되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정책(Resilience & Sustainable Response Policy for Heritage Protection, RSRP)을 수립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RSRP 실행을 위해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들을 마련하고 집행하기 위한 조직들이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재난·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방재 기술들의 도입은 제도의 틀 안에서 평가되고 인증이 되어 현장에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넷째, 문화유산에 설치되어있는 문화재보호 시설과 장비들을 체계적으로 인증하거나 심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를 통한 문화재의 보호 활동에 명시된 조문에는 새로운 안전방재기술들을 검토하거나 인증하거나 설치, 운영에 관리·감독 및 감리를 할 수 있는 업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가유산법에 명시된 제21조 재난예방 및 대응, 제22조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활동을 위한 행정체계의 마련에 따른 이를 현장에서 활동하여야 하는 실무조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앙부처 중 안전·방재 산업분야를 다루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에서는 각자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시험, 인증 및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실행을 위한 산하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과 점검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토론자인 나는 제3차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 정책방향 수립” 정책포럼에서 안전·방재 분야의 토론 발제문의 결론은 문화재청에서 가칭 「문화재안전·방재기술원」을 설치 운영하여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방재 기술 분야를 정립하고 현장에 설치, 운영을 위한 활동과 함께 인증업무, 검토업무, 문화재 설치 적합성 판단 업무, 문화재 안전·방재 산업분야 정책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국가유산법과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기를 제언드리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첨언: 이를 통해 문화재청에서는 안전·방재 정책이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안전·방재 정책 패러다임”을 가지고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화재 특성을 반영한 안전·방재 산업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작게는 사찰 대응전 내부의 넓고 많은 카메라, 감지기 전선들이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나의 첨단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싶고 불특정 다수 또는 기후 변화에 의해 예측하지 못한 재난·재해에 대해서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하는 손발이 되는 조직이 구성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문화유산의 보존·수리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김 우 응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 원장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20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인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19409호, 2023.5.16, 제정]」을 제정하였고, 12개의 문화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2022.12.20.)」을 선포하는 등 국가유산체제의 도입과 문화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였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사용되었던 문화재 용어의 정책적 한계와 분류의 비체계성, 국제기준과의 비정합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유산 개념을 받아들여 국가유산을 위시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의 분류체계로 재정립하는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구현하는 ‘원상’¹⁾을 유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개입 시 진정성·완전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지향하며, 문화유산의 보존과정은 조사 및 연구, 중요성 평가, 계획 수립과 실행, 모니터링 및 관리의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조치는 유형적 차원의 개입(유지관리, 손상방지, 수리, 복원 및 정비)과 개입과 무형적 차원의 조치(사용의 유지, 관련 전통지식·기법·기술의 전승)에 대한 설명, 조건과 고려사항을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구조적 건전성과 미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 진정성, 원상 등에 대한 판독성을 증진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최근의 문화유산 보존·수리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의 분류체계로 재정립하는 국가유산체제의 도입에 맞춰 문화유산에 대한 진정성·완전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지향하며, 보존과정에서 실행에 앞서 조사연구, 중요성 평가,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의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며, 보존조치는 유지관리, 손상방지, 수리, 복원 및 정비 등 유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전통지식·기법·기술의 전승

1) ‘원상’은 ▲위치, 배치 및 주변 환경,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및 관리체계, ▲의미, 맥락, 정신 등 무형적 속성으로 구현 (6개 속성)

등 무형적인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수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외에도 근현대문화유산, 역사문화자원 등 보존·수리 대상의 확장을 고려해야 하며, 유형의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무형의 전통기법(기술)까지 보존·전승해야 하므로 인력(무형문화재, 수리기능자 등), 재료, 도구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여의치 않다.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조사연구의 미흡, 이로 인한 설계 단계에서의 정보(조사연구자료 등) 부족 및 설계 품질 저하, 시공단계에서의 잦은 설계 변경 및 시공 품질 저하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역량 문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고령화 및 역량 문제, 문화재수리업(종합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의 영세함 등이 수리품질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보존·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문화유산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기초조사연구자료를 설계 및 시공 단계 등 일선 현장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최초 설계자가 해체 실측이나 설계 변경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수리공사 현장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둘째, 문화유산수리 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응시요건은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4) 문화재수리기능자일 것 등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유산수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므로 문화유산수리현장의 경력이나 전공 제한 등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수리기술자를 배출하거나, 현행대로 수리기술자를 배출하되 전문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전문성을 배양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수리현장 중간관리자급인 기사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확대 및 역량 강화, 고령화에 대책 마련해야 한다.

향후 문화유산수리의 대상이 근현대문화유산이나 역사문화자원으로까지 확장을 고려하여

수리기능자 종류 확대 및 기능자 전 종목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자의 노령화 가속으로 인한 전통기법의 단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기능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수리기능자 노임단가의 자체 조사 및 발표도 필요할 것이다.

- 경력 인정 기술자 및 기능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수리현장에서의 경력이나 기술(기능)의 숙련도가 뛰어난 인력을 경력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유산수리체계로 흡수함으로써 수리현장의 인력 수급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문화유산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전문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수리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현행 등록 요건은 기술자 2명+기능자 3명으로 구성되어 여러 개의 현장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리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향후 문화유산수리의 대상이 근현대문화유산이나 역사문화자원으로까지 확장을 고려한다면,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요건을 수리공사 전체 공종을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도 수리공사 각 공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문화유산수리공사를 용역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은 조사연구, 설계, 시공 단계별로 업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각 분야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용역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간 협업을 통하여 고중에 기반한 보수정비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한 유적 정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보존·수리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 수요조사를 통하여 인력 수급을 계획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종류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관련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재료의 수급도 마찬가지다.

문화유산 보존·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문화유산 수리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연구기능 강화 및 고도화, 문화유산 관리 및 수리종사자의 양성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 문화재수리업의 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의 목표는 문화유산 보존·수리 품질 향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활용을 위한 제언

김 재 흥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센터장

1. 문화유산 활용의 개념

문화유산 활용이란 문화유산+활용¹⁾의 합성어로서 문화유산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잘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를 찾아내어 새롭게 생명을 불어 넣거나 변용관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잘 살려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모든 행위를 ‘문화유산 활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문화유산 활용의 필요성

1)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활용영역 역할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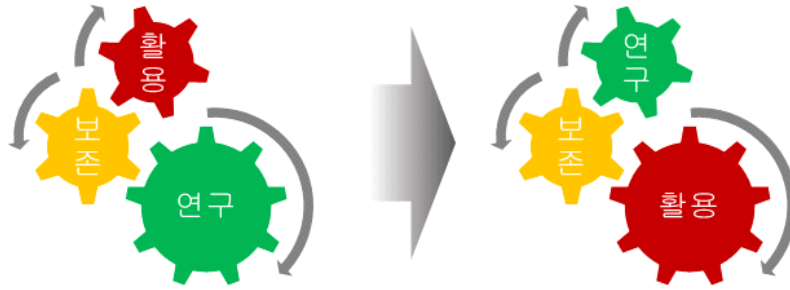
최근까지 문화유산에 관련된 분야에서 조사, 발굴, 연구, 관리, 수리, 복원이라는 범주가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유산 향유라는 부분에서 시작한 활용의 범주영역이 점차 성장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생산단계>보존/관리단계>활용단계였지만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대와 지역의 문화가 성장할수록 활용단계>보존/관리단계>생산단계로 변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 기반조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과도 일맥상통한다.²⁾

1) 활용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그것이 지닌 능력이나 기능을 잘 살려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문화유산에서의 활용이란 기본적으로 대상문화재의 능력이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것 즉 보존을 전제로 해야 한다.

2) 「문화기본법」제정(2013.12)에 의한 문화향유권의 법적 보장, 「지역문화진흥법」(2014.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 5) 제정 등을 통해 문화유산향유의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문화유산 분야의 성장 모식도 (본인작성)



2) 문화유산 보존 양상의 변화

문화유산 활용의 위상변화는 문화유산 보존 양상의 변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보전을 위한 보존”의 개념으로 현상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림 2 문화유산 보존양상의 변화 모식도 (본인작성)



이것은 보존을 통한 소극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그런 연유로 현재에 와서는 활용중심의 보존 개념을 지향하는 추세이며,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적극적 보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는 적극적인 관리시스템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 문화유산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문화유산 보존의 양상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보존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3) 문화유산 활용의 중요성

문화유산의 새로운 기조에 따라 문화재청의 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보존이라는 개념을 사후보수개념에서 사전 예방 보존관리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전

예방 보존관리 개념에는 문화재 돌봄 분야와 활용분야가 주축이 되고 있다. 문화재 돌봄의 개념은 2008년 승례문 화재사고 이후에 필요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예방관리를 위해 상시 관리사업, 안전관리사업 등의 사업을 통합하면서 만들어졌고, 현재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돌봄은 문화재 보존·관리에서의 사전관리라고 한다면 활용은 향유와 이용이라는 차원에서의 사전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특히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문화유산 활용은 보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문화유산의 연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것이 가진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잘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러한 행위는 문화유산이 가진 건축학적·미술사적·고고학적·역사적·지리적·경관적·인물사적 등의 여러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잘 살려서 교육적인 목적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들과 향유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들이 향유하게 됨으로서 국민 모두가 문화유산의 파수꾼이자 지킴이가 된다면 아주 작은 피해에 대한 부분도 간과되지 않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선진국의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관광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 및 보존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유산 활용에 대해 ‘문화유산 보존의 적극적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문화유산 활용은 문화재 보존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이며, 다만 문화유산 가치와 기능 또는 능력을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요구된다.³⁾ 활용은 또한 ‘문화재에 담긴 가치를 찾아내어 새롭게 생명을 불어 넣거나 변용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⁴⁾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연구의 가치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본다. 즉 문화유산 활용은 문화유산의 연구와 조사의 기반 위에서 문화유산의 적극적 보존의 행위로 문화유산의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계몽하는 기능과 함께 문화유산 지닌 가치에 숨을 불어 넣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3. 국가유산 기본법 속 활용

1) 목적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

3) 심승구,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 문화재청, 2006 재인용

4) 장호수, 문화재 활용론_활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인문컨텐츠 제 7호 재인용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6) 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위원회의 설치·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8) 조사·연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 이를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9) 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0) 인력양성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화된 관리 또는 전문화된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으로 함이 타당함

11) 국가유산 활용·진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전시·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운영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한국문화재단의 승계

4. 문화유산 활용의 현황 분석

1) 문화유산활용 분야의 인건비 산정 기준

문화유산 활용분야는 당해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건축적·미술사적·지리학적·문헌사적·고고학적 등 다양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활용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가치를 전혀 고려치 않은 단순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문화유산의 활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화유산 가치의 전달과 함께 보존을 전제로 한 활용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유산 기본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문화유산 활용분야의 현실은 어떨까? 2023년도 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와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인건비를 단순 비교하더라도 그 차이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연구와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전문영역에서의 콘텐츠 개발, 운영, 관리, 정산, 보고서 작성까지 일련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직업으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자 한다면 이런 불균형한 구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등급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등급	문화재 활용사업 인건비	비고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총괄 책임자	월 2,551,119원	1개월을 22일로 하여 참여율 50%로 산정
연구원	월 2,681,226원	사업관리자	월 1,279,04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진행보조인력	당해 최저임금 × 시간	
보조원	월 1,344,277원			

즉 국가유산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활용 전문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인건비 산정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계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정의된 산업이란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며, 사람들이 쓰는 모든 물건과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일자리들은 이것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진다 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문화유산 활용 분야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인 품목들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어떠한 상황일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산업으로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2023년도 문화재청에서 장려하고 있는 전체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율은 30% 이하이며, 이것 또한 문화유산 활용 시 현장을 보조하는 진행보조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부분으로 산업으로 가기에는 매우 부가가치가 낮은 상황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연구조사부터 콘텐츠 개발, 그리고 진행 및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까지 전 부분에 걸쳐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직종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뛰어들 환경인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더더욱 문화유산 활용의 업무적 특성상 국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인건비 비율은 현실적으로 산업으로 육성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문화유산 연구 및 조사 용역의 경우 80% 정도의 비율로 인건비가 책정되는 상황이고, 문화유산 발굴, 수리, 실측설계 등의 분야도 70% 이상의 인건비가 책정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일자리가 확보되고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활용분야의 인건비 비율이 문화유산 보존분야의 다른 일자리들과 비슷한 비율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전문영역으로서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분야는 성장할 동력을 얻지 못하므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가유산 기본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즉 국가유산 체계에서 국가유산 활용을 중요시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의 일상화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그 품질에 따라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유산 체제가 보존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활용의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그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좌시하면 미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을 실행시켜 줄 그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직업으로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3) 문화유산활용의 전문인력 필요성

서두에서도 언급했듯 문화유산 활용은 단순한 이벤트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국가유산 기본법에서 기본이념으로 말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주는 것을 기본이념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문화유산 분야의 인력들을 활용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년 이상 상근으로 문화유산활용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젊은 인력들이 거의 없다. 대부분 문화재 활용사업에 뛰어든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은 일은 많은데 비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해야 하는 일들은 많은데 그에 비해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이 분야로 뛰어들려고 하는 젊은 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속된다면 향후 아무리 좋은 정책이 수립되더라도 모세혈관처럼 그 정책을 수행해 줄 인력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든다. 발굴분야, 설계분야, 연구분야에서도 20~30대의 젊은 인력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재 보존분야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문화유산 관련 학과에서는 점점 학생들의 수를 줄여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통건축분야의 경우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거의 없으며 향후 10년 뒤에는 전통건축의 조사 연구분야의 미래는 어두운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발굴, 연구조사, 설계분야도 이렇지언데, 이보다 열악한 환경의 문화유산 활용분야는 더더욱 그 장기적으로 미래를 그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세스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일을 수행해야 하며,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직업군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가?

첫 번째 문화유산활용은 단순한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언급한 것 중에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②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 ④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

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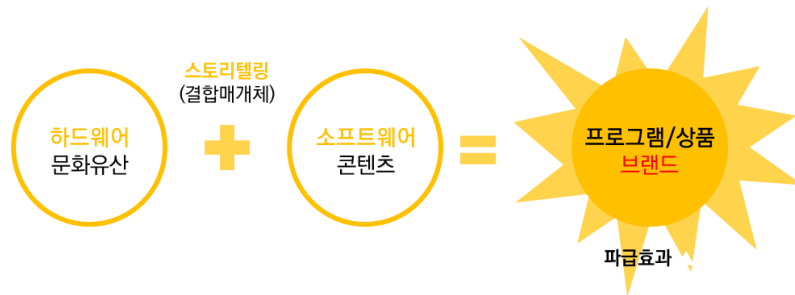
두 번째 문화유산 활용을 기획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가치전달이라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당해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해 문화유산에 관한 심층 연구가 없이 그 가치를 찾아낼 수 없으며, 가치의 전달 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화유산 활용은 당해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재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가치를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해석에서 나온 키워드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창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대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IT와 문화예술 등 다른 가치체계와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치의 극대화를 이루어 냄으로써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확대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문화유산 활용의 가치 확대에 대한 선순환 구조는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그 문화유산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 및 높일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국민의 가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문화유산이 향유됨으로써 국가유산 기본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보존의 새로운 방향으로 축을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 및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활용은 문화유산 활용인가? 본인은 당연히 그것은 올바른 문화유산 활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화유산 활용과 문화축제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 문화유산 활용은 문화유산의 가치전달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이 목표이지만 문화축제는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찾아온 사람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차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활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문화유산의 가치전달을 우선할 것인가? 지역 활성화 혹은 도시재생이 우선인가? 그것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미래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문영역이 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관련 학과를 통해 배출되는 인력들은 어디로 진출해야 하는가? 우리는 10년 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의 정책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활용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문화유산을 좋아해서 전문적인 과정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야의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군으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학교에서 담당과를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졸업 후 어떤 분야로 나갈 수 있는가이다. 앞으로 문화유산 분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직업군으로서 또 하나의 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정리해보면 국가유산 기본법을 통해 실현되는 문화유산 보존정책은 앞으로 국민의 공감을 통해 보존하겠다는 것임을 기본법 안에서 여러 번 밝혔다. 그런 이념과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유산이 중심이 되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문인력들이 양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국가유산으로의 체제가 큰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국가유산 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화유산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하고 생각보다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복잡한 일이다. 당해 문화유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찾아내고 또 그것들을 콘텐츠화해야 하는데, 요즘은 단순하게 처리하면 참여자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없다. 그런 연유로 참여자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결합매개체로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기획할 수 없다. 수십 번의 아이디어 회의와 피드백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림 3.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유산의 활용 모식도(본인작성)



전체적인 흐름에서 스토리가 없는 활용은 속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와 같아서 단발성으로 끝나기 쉽다.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엮어줄 수 있는 스토리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활용이 되려면 전문인력을 통해 프로세스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유산 활용의 기본은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획해야 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단순하지 않다. 효율적인 가치 전달과 질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 서비스와 복지를 실현하려면 전문인력 양성은 꼭 필요한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더 복잡하면서도 진행해야 할 업무가 많다.

【행사 전】

- ▶ 대상 문화유산 분석(스왓분석, 지역분석 등), 프로그램 기본계획안 도출, 사전답사, 지형지물 분석, 홍보물 제작(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배너 등), 프로그램 실행 계획, 실행예산, 운영시나리오 작성, 업무 분담표, 타임 스케줄, 공연자, 강사 섭외, 버스 예약, 품의서, 지출결의서, 구입 물품 견적, 물품 주문, 행사보험, 교보재 제작, 교재 작성 및 제작, 진행요원 확보, 기념품 구입, 실행계획 시뮬레이션 및 보강, 보도자료 작성, 모객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참가자 1차 취합, 명찰제작, 개인정보 동의서, 설문지 제작, 물품 사진 촬영, 카드뉴스제작 등등

【행사 후】

- ▶ e나라 도움을 통한 정산작업, 인건비, 대여료 등 비용정산, 보도자료 작성, 설문자료 분석, 행사사진 분류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정산보고서 작성 등등

조사 및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뿐만 아니라 홍보를 통한 모객, 그리고 직접 운영하고 행사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일련의 복합적인 일을 진행하는데 비해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젊은 인력들의 장기적으로 직업군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힘들게 되고 단기적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국가유산기본법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고자 필요한 부분은 바로 젊은 인력들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문화재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국가유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5. 문화유산 활용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언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더욱 가치 있게 전해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산 기본법에서 추구하는 기본이념과 목적은 바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활용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 즉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미래세대에 더욱 가치 있게 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담당자의 의지와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활용이 아니라 국가유산 기본법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울타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부터 산업으로서의 토대는 마련되는 것이고 향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전문분야 직업군으로도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유산기

본법에 나와 있는 보존분야처럼 문화유산 활용분야에도 인증제도를 통한 직업군으로서의 전문성도 살펴보는 방안도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활용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토론자로 나서기는 했지만 주어진 시간이 며칠 되지 않아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제안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에 다음에는 실효적으로 활용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어 볼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현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해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국가유산 기본법에서는 보존, 활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문화재 위원회에 보존과 관련된 분과는 있지만, 활용분과는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그러하기에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없다. 향후 국가유산기본법이 새로운 체계로 삼은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유산 활용분과가 따로 마련되어 발전된 의견들을 교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법적인 테두리가 세부적으로 실효성 있게 마련되었을 때 국가유산으로의 변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문화유산 관광은 오리지널리티가 생명이다. 직접보고 느끼고 듣고 체험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충남 부여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백제재현단지를 만들었지만 관람객들이 거의 찾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재현이 아닌 진짜를 보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 공간을 느끼고, 공연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 AR, VR, XR,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에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데 있어서 오리지널리티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서 박물관 같은 곳에서 처음에는 관심을 받다가 많이 시들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문화유산 활용에서 주와 객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문화유산이 중심이 되어야 하듯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이라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꼭 물질적인 것만 생산해내는 것이 산업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도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문화유산 활용은 어쩌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향후 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멋지고 과학적인 것들만 산업이 아니라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향유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성장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란다.

넷째 몇 가지의 의견을 드리면 기본법 조항 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 이를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화된 관리 또는 전문화된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유산 활용은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활용을 통해 우리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 이로써 활용은 문화유산의 새로운 보존이라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또 지역의 새로운 문화유산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일련의 노력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그 문화유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이 될 것이다. 이제 문화유산의 활용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다가올 미래를 마주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런 시기에 국가유산기본법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유산 기본법은 문화유산 활용분야를 보았을 때는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유산,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유산의 가치 발전이라는 이념과 목적이 꼭 실현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토론자로 나서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전통문화산업 키워드의 화두는 새로움과 복고가 합성된 뉴트로(New-tro) 현상으로, 단순한 과거의 회상으로 소구되는 문화코드의 조합이 아닌 소비자 감성을 자극한 새로운 문화 동향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뉴트로의 단순한 아날로그 감성의 회고가 아닌, 옛 것을 알고 재해석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문화코드가 새로운 콘텐츠로 이어지며, 뉴트로 중심에 선 전통문화산업의 흐름은 전통을 계승, 보전하는 전승공예와 함께, 전통이 축적되어 현대적 조형으로 다양하게 변주되어 일상 속 쓰임을 통해 고귀한 가치가 녹여 드는 문화유산의 본질이 강조된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과거와 현대의 조화, 스타일과 스타일링, 포지셔닝을 통해 독자성을 찾아내어, 변함없는 가치를 담아 대중의 감성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긍정적 감성이 될 것입니다. 문화유산의 범주 안에서 전통 문화, 예술의 가치 속에 지역특화, 지역소재, 장인과 이어지는 고리를 창의적 사고와 함께 정체성을 불어넣은 문화예술과 상호 융합하여 존재의 필요성이 찬란한 문화유산과 숭고한 장인정신이 대중과 소통되어 향유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이어온 지역문화, 지역예술, 지역장인을 상호 연결 네트워킹 구축하여, 전통 콘텐츠 소재의 다양한 시각의 관점 접근 속에 전통문화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스토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 기획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문화유산으로 경쟁력을 부각 시켜야 하며, 많은 대중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통문화의 활성화 및 지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 대상인 젊은 타겟을 위한 현대적 감성 접근이라는 다양한 기획 의도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의 현황과 방향성

안 형 기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겸임교수

문화유산 복원으로 대표될 수 있는 디지털 헤리티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 융합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연구·보존·전시·관리·기록 및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문화유산은 정보화를 통한 기존 문화유산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경험하는 방식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은 2003년 유네스코가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대한 헌장'을 제정한 이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문화유산을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그리고 외교부 등 정부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헤리티지를 개발하고 있다.

2021년 문화재청은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외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의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과 관리, 서비스를 위한 문화재 활용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올해 통과된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유산의 관리, 산업육성을 위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융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디지털 헤리티지는 유물, 유적을 넘어 고대도시의 복원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 의해 이탈리아 로마의 모습을 디지털로 복원한 로마 리본(Rome Reborn, 2007) 프로젝트가 있으며 국내에도 문화재청에 의해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2020-2022)가 진행된 바 있다. 최근에는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신라 경주의 디지털 복원을 2025년까지 제작 예정이다.

그러나 매년 진행되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순한 시각적 효과나 설명에만 치중하거나 건물 복원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관성이 없고 일회성이 강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디지털 헤리티지는 문화유산이라는 인문학 분야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분야로서 주요 목적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인문학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요소에서도 주된 내용물은 인문학에 바탕을 둔 교양적 요소이다. 문화유산의 학술적 연구나 핵심가치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기술적, 시각적으로 흥미와 호기심만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접근한다면 그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의 디지털 헤리티지는 단순한 설명, 시각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내재적 가치와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복원, 재현하여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문학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인 디지털 헤리티지는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 분야가 결합된 것이다. ICT 분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인간 경험의 다양화 및 시공간의 확장이다. 그러나 체험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개별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기술적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헤리티지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스토리텔링이다. 단순한 건물 재현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보다는 과거 사람들의 생활을 복원 및 재현하여 현대인들과 공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여 그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것보다 문화유산을 둘러싼 역사, 고고학, 민속, 건축, 예술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시킨 종합적인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개별 문화유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화유산과 다른 문화유산을 결합하여 가치를 확장시키거나 의식주와 같은 생활, 놀이 문화 등을 복원하여 역사적 사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굴된 유적과 유물과 같은 실물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후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을 받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재인 문화유산의 활발한 보급과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프린팅, 촉각을 활용한 입체북, 오디오 가이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 소외계층을 고려한 역사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 정류장이나 디지털 사이지니 등에서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수원화성 XR 문화유산 버스와 같이 이동형 문화유산 관람 서비스나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 등 모빌리티를 이용한 전시 서비스의 확장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헤리티지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아카이빙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동안 문화재청이 획득한 3D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작업하였던 여러 디지털 기초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데이터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며 디지털 헤리티지의 지속성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접근한다면 콘텐츠의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내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중들이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완성도 높은 디지털 헤리티지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른 문화콘텐츠의 소재 선정에 영감을 줄 수 있으며 문화유산의 대중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전문 인력 양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국가유산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정 상 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1. 국가유산산업 진흥법 제정의 법제도적 근거

1)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

-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
-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문화산업의 정의

- 문화산업: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종류	개별 근거 법률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없음>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종류	개별 근거 법률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전통문화산업 진흥법(2023. 8. 24. 국회통과)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전시산업발전법(산업통상자원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3) 기타

- 한식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전통무예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안동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원주시 옷·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국가유산 활용 산업 사례와 발전 가능성

○ 프랑스 문화유산 활용 관광

-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발전시키고 관광으로 연결
- 세계 문화유산 42건, 자연유산 6건, 복합유산 1건 등
- AGP(Art Graphique & Patrimoine, artgp.fr): 프랑스와 해외에서 문화유산 2,500곳 3D 레이저 스캔, 촬영 및 모델링

○ 일본

- 문화재산업은 문화산업의 일부로서, 문화산업은 예술제, 무대예술, 문화시설, 문화재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
- 이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문화재(다만 주로 관광으로 측정)
- Japan Heritage: 2015년부터 문화청이 후원한 프로그램으로 일본의 유무형의 문화재

또는 비지정문화재를 스토리로 구성하여 선정하였으며 현재 100여개가 선정됨

○ 중국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호: 문물 보호를 위한 기술혁신 강조

- 중국 문화재 자원의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복원, 예방적 보호, 재해 예방 및 축소를 위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
- 국가 핵심 연구 개발 계획에서 문화재 보호 및 활용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주요 재료, 공정, 장비 및 통합 기술의 발전을 계획
- 문화재 보호 장비들에 대한 표준화와 품질 인증 등

○ 문화유산 디지털화

- 유로피아나(Europeana: <https://www.europeana.eu/en>): 유럽 전역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미술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로, 2008년 출범된 이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추진 아래 유럽 지역 내 28개국 1,500여 개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미술관 콘텐츠의 통합검색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2018년 10월 현재 약 58,000,000건의 콘텐츠를 제공
- 구글 아트앤컬처(Google Arts &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
- 루브르 박물관 버추얼 전시: <https://www.youvisit.com/tour/louvremuseum>
- 로마 리본 프로젝트: <https://www.romereborn.org/> → <https://www.flyoverzone.com/>
- 사이아크(CyArk: 사이버 아카이브Cyber Archive의 준말, cyark.org): 앙코르와트, 폼페이, 치첸이차, 청동릉, 니네베, 안토니우스 방벽, 러시아어산과 같은 대표적 건축 문화 유산을 주로 디지털 스캔, 모델링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3. 전통문화산업과의 차별성

1) 전통문화 등의 의미

- 전통문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통예술: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예술과 관련된 것
- 전통생활양식: 한복, 한식, 한옥, 전통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 전통문화상품: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
- 전통문화산업: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전통문화콘텐츠: 전통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
-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전통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
-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작물로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

2) 국가유산산업과 차별성

- 전통문화산업은 첫째, 국가유산을 제외하고 있고, 둘째, 전통적 의식주와 예술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어 있으며, 셋째, 제작, 유통, 소비를 전제로 한 상품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임
- 국가유산산업은 국가유산 그 자체의 보호와 활용에 기반한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규모나 경제성에 있어 산업화 전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념으로 형성되고 있음
- 오늘 발표한 국가유산산업 통계 개발과 국가유산산업 발전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전통문화산업과 국가유산산업 간의 구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국가유산산업은 국가유산에 한정함으로써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기존의 국가유산 관련 직종들이 독자적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아울러 국가 예산 지원에 종속된 산업이 아니라 자생력이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문

- 전통문화산업과 국가유산산업이 구별되는 핵심적인 표지는 어떤 것입니까?
- 국가유산산업이 산업으로 자생력이 있는 분야 또는 직종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국가유산 관련 학과 학생들의 진로 또는 창업 분야는 어떻게 예상됩니까?(예를 들어 ‘커리

어넷'에서는 문화재보존원(수리 또는 복원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감정평가사, 전통건축원, 서예가, 학예사, 석공, 목공, 광고기획자 등이 안내되고 추가적인 것으로 문화재디지털복원가, 문화재스토리텔링작가, 문화재보존전문가, 체험상품기획자, 소장품관리원(레지스트라), 전통가옥기술자,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개인적 의견으로 국가유산산업의 대표적 분야 또는 진흥이 필요한 분야를 국가유산 재료 산업, 방재산업, 복제산업, 조사기록산업, 디지털 아카이브 산업, 무형유산공연산업 등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추가될만한 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 정책방향 수립

부
록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5 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 7 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 8 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9 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지역의 통합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3 장 국가유산 보존·관리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매장유산의 발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제20조(자격 관리) ①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만이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격을 검증·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4 장 국가유산 활용·진흥

제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전시·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운영 등 국가유산정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유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국가유산 세계화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국가는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 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국가유산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①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유산(이하 “외국유산”이라 한다)은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 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9409호, 2023. 5. 16.>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 3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으로 한다.
-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 ⑯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 ⑰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 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 ⑳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 ㉑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전통사찰”로 한다.
- ㉒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㉔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㉖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